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도매시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한시정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634”를 “632”로 하고, 일반직 계 “630”을 “6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0”을 “60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665”를 “2,645”로 하고, 일반직 계 “2,665”를 “2,6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20”을 “2,600”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이하	3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20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제4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둔다.	① ----- ----- ----- ----- 2025년 12월 31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 -----.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
④ 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단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한시정원) ①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제45조(한시정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
부에 둔다.

②·③ 삭제

④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
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
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
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4</u>	<u>632</u>	-2
·	·	·	
·	·	·	
일반직 계	<u>630</u>	<u>628</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0</u>	<u>608</u>	-2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65</u>	<u>2,645</u>	-20
일반직 계	<u>2,665</u>	<u>2,645</u>	-2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20</u>	<u>2,600</u>	-2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